

제·개정 및 폐지 예고문

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(회규)을 제·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0. 25.

대한체육회장

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(일부개정안의 경우에 한함).

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일부 개정·폐지 사전예고

1. 제정·개정·폐지 이유

- 징계의 취소나 법원의 무효 판결 시에, 이미 실제로 집행된 징계 기간이 있을 수 있음. 이를 고려하여, 새로운 징계가 내려질 때 이전에 집행된 기간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재심의 신청자에 합리적

2. 주요내용

- (3조) '기능' 추가
 - 6호 징계의 결정 및 징계 효력에 관한 사항
- (33조) '징계의 의결 및 통보'와 관련한 내용으로 조항 이동
 - 종전 제36조 제2항에서 제33조 제3항으로 이동
- (36조) '재징계 시, 징계의 효력 시점' 명확화
 - 제36조 제2항에 "징계 취소나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 후에 동일한 징계로 재 징계 시, 실제 징계의 시작 시점은 징계 효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."라는 문구 추가

3. 의견제출

-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